<지침서식 제9-6호>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보고)서

☐ 현지법인 내용변경　　☐ 자(손자)회사 설립·증액·청산　　☐ 기타

외국환은행장 귀하　　20　.　.　.

신고(보고)인　상 호 또는 성 명　　(인)
사업자(주민) 번호
소재지 또는 주 소　　전화
(담당자 직성명 :　　)

변경대상　현지법인명 :
현지법인　최초신고번호 :　　신고금액 :

아래와 같이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을 신고(보고)합니다.

	변경전	변경후
1. 변 경 사 항		
2. 변 경 사 유 (요 약)		

붙임서류 : 1. 당초 신고(보고)서 사본　　2. 변경사유서
3. 자(손자)회사 설립시는 자(손자)회사 사업계획서　　4. 기타 내용변경 신고(보고)시 필요한 서류

---

1. 관련 신고번호 기재 (20　.　.　.)과 관련됨.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20　.　.　.

신고기관 :　　(인)

5-09-0289(2-1) (2018.01 개정)
(지정취소시까지 보존)

KEB 하나은행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보고) 관련 유의사항

1.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지정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

2. 현지법인의 지분율 변경 또는 자(손자)회사의 설립·투자금액변경도 내용변경 보고대상에 포함됨

3.해외직접투자 유효기간 연장, 대부투자기한 연장, 대부투자 상환방법·금리변경 등의 경우에는 내용변경 보고가 아닌 내용변경 신고대상임

4. 증액투자는 내용변경보고대상이 아닌 신규신고 대상임

5. 신고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내용변경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